

『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수민 의원외 10인

2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거 장애인의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,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

3. 주요내용

- 장애인 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전동기기의 이용촉진을 위해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의 범위에서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
-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 기준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
- 수리센터의 불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수리센터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
- 지정 수리센터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4. 참고사항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, 제32조, 제66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안정 기여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한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지원센터 운영과
- 전동기기 이용 촉진을 위해 전동기기 충전소를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에 설치·운영토록 하였음
- 또한,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,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토록 기준을 정하였으며
-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의 불법·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수시 지도 및 감독토록 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기기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와 휠체어 수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이동권보장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